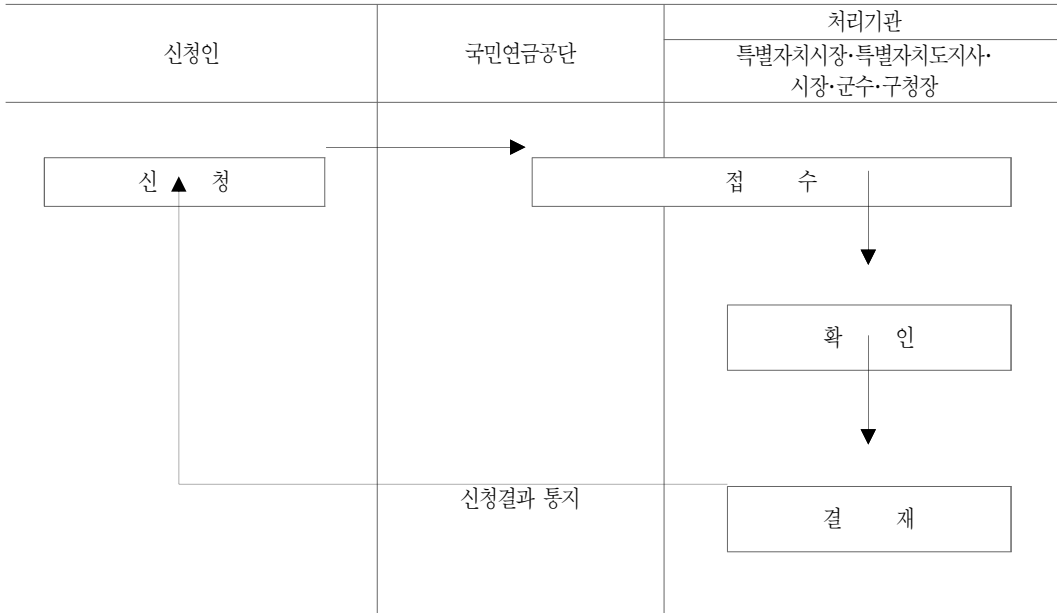


제출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가. 성년후견개시,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사실나.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다.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라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3. 대리수령인이 신청인의 배우자,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4. 대리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법정대리인이 성년후견개시,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
------	--

처리 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유의 사항

기초연금은 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복리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금합니다.